
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신청군별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공천적용 기준 (2026.2.26. 제9회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사항)

1 광역단체장 공천신청자

- 미 실시

※ 역량강화교육 및 기초자격평가(PPAT) 시험 대상에서 제외

2 기초단체장 공천신청자

· 교육이수 여부에 따라, 공천심사의 지속·배제를 결정

-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대비 역량강화교육
 - (이수자) 공천심사 지속
 - (미이수자) 공천배제
-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(PPAT) 시험 : 미 실시

※ 기초자격평가(PPAT) 시험 대상에서 제외

3 지역구 광역·기초의원 공천신청자

· 교육이수 여부에 따라, 시험점수 인정 여부를 결정
· 인정된 시험점수에 따른 정량 가산점 부여

○ **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대비 역량강화교육**

- **(이수자)** 공천심사 지속. 시험점수 인정
- **(미이수자)** 공천심사는 지속되나, 기초자격평가 시험에 응시하여도 시험점수와 무관하게 **'0점'** 처리 (가산점 미부여)

※ 향후 미이수자 명단은 중앙연수원(교육연수팀)에서 중앙 및 시·도공천관리위원회에 송부 예정

○ **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(PPAT) 시험**

-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한 시험응시자 : 경선시 점수대별 정량가산점 부여

점수	90~100	80~89	70~79	60~69	50~59	40~49	30~39	30점미만
가산점	5.0	4.5	4.0	3.5	3.0	2.5	2.0	0

-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시험응시자 : 시험점수 '0점' 처리
- 결시자(부정행위자 포함) : 교육이수 여부와 무관하게 시험점수 **'0점'** 처리

※ 향후 결시자는 중앙연수원(교육연수팀)이 지정한 기일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이는 결시자 명단과 함께 중앙 및 시·도공천관리위원회에 송부 예정

4 비례대표 광역의원 공천신청자

- 교육이수 여부에 따라, 시험점수 인정 여부를 결정
- 시험점수 70점 이상 획득해야, 공천 지속 가능 (70점 미만 공천배제)

○ **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대비 역량강화교육**

- **(이수자)** 공천심사 지속. 시험점수 인정
- **(미이수자)** 공천배제(기초자격평가 시험에 응시하여도 시험점수와 무관하게 **'0점'** 처리되므로 커트라인 적용 대상)

-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(PPAT) 시험
 -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한 시험응시자
 - ① 70점 이상을 획득한 응시자 : 공천심사 지속
 - ② 70점 미만을 획득한 응시자 : 공천배제
 -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시험응시자 : 공천배제(시험점수와 무관하게 '0점' 처리)
 - 결시자(부정행위자 포함) : 역량강화교육 이수 여부와 무관하게 공천배제

5 비례대표 기초의원 공천신청자

- 교육이수 여부에 따라, 시험점수 인정 여부를 결정
- 시험점수 60점 이상 획득해야, 공천 지속 가능 (60점 미만 공천배제)

-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대비 역량강화교육
 - (이수자) 공천심사 지속. 시험점수 인정
 - (미이수자) 공천배제(기초자격평가 시험에 응시하여도 시험점수와 무관하게 '0점' 처리되므로 커트라인 적용 대상)
-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(PPAT) 시험
 -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한 시험응시자
 - ① 60점 이상을 획득한 응시자 : 공천심사 지속
 - ② 60점 미만을 획득한 응시자 : 공천배제
 -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시험응시자 : 공천배제(시험점수와 무관하게 '0점' 처리)
 - 결시자(부정행위자 포함) : 역량강화교육 이수 여부와 무관하게 공천배제